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2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우상호·김승원·양정숙

송갑석 · 남인순 · 김영호

이상헌 · 이성만 · 황운하

아수진비 · 김용민 · 전혜숙

서동용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등록을 하도록하고 있는데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외국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.

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할 수 없기 때문에,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.

그런데 최근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접속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담당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통신복지의

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극적인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으로써, 가계의 통신비 부 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7조 제1호). 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가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등록의 결격사유) 전기통신	제7조(등록의 결격사유)
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	
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	
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	
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	
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	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	1. <u>국가</u>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